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입학처), 02-970-6832

제정 2012. 4. 4.

개정 2016. 9. 1.

개정 2019. 6.24.

개정 2021. 10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대학입학 부정 방지 대책 수립 · 시행
- 2.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· 통제
- 3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
- 4.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·중간 및 사후 자체감사 실시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내부위원은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③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,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 등이 있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신·편입학 전형기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장은 회의 의결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· 보관하여야 한다.
  -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  - ② 간사는 입학처 직원 중에서 입학처장이 지명한다. (개정 2016. 9. 1.)
- 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입학전형의 자체감사 및 처리) ① 위원장은 대학입학전형에 관하여 사무 국장에게 감사요청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의 감사결과 통보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

후 처리하여야 한다.

부칙(제121호, 2012. 4. 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38호, 2016. 9. 1.)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77호, 2019. 6. 2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43호, 2021. 10. 1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